

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5. 16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5.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.5.4.
- 다. 상정일자 : 제20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6.5.16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행정과장 서문석

가. 제안이유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
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주요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서울특별시
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보장
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로 변경

- 2) 관련 법령을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(안 제1조)
- 3)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·내부기구,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기능·구성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·운영 사항 등 상위법령상 규정한 사항 삭제 및 미수룩으로 중복 배제
- 4)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구성·운영 내용 신설(안 제4조, 제5조)
- 5)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내용 변경(안 제6조)
- 6) 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사유 수록 (안 제9조, 제10조)
- 7) 조례 개정 전 기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부칙에 추가 (안 부칙 제2조)
- 8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근거법령이 「사회복지법」에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-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·자문 사항, 위원의 임기와 회의 운영,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 지원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에서 중복을 배제하였고, 실무협의체 및 실무

본과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 각 협의체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음.

- 2014년12월30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였고,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한편, 읍·면·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시·군·구에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는바,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